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14호 2025. 5. 1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796호)
- 용역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803호)
-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804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예 천



1. 시행규칙명 :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8.12.)에 따라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2019.12.)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 갱신 대상기관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장기요양기관 갱신 신청에 관한 근거 법령 반영(안 제1조,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서면심의 대체 규정 마련(안 제8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사항의 심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처리 기준 점수 하향 조정(안 제9조)

- (당초)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 80점 이상
→ (변경) 70점 이상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변경 및 갱신 심사기준표 추가
(안 별표 1, 별표 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3) 팩스 : 054-650-63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 054-650-6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예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을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2

같은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항목	세부 기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처분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tr><td>점수</td><td>사회복지사업법</td><td>노인복지법</td><td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d></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_____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tr><td>점수</td><td>노인장기요양보험법</td></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table><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tr><td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d></tr><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tr><td>④ D등급(4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항목	세부 기준	점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운영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계획 수립	_____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td></tr><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																
	☐ 직원 교육계획 수립(3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직원 교육계획 수립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작성</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td></tr><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미흡하게 수립</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미흡하게 수립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미흡하게 수립																		
☐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미흡</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미흡																		
☐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table><tr><td>구분</td><td>전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 rowspan="3">시설급여</td><td>2점</td><td>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td></tr><tr><td>1점</td><td>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td></tr><tr><td>0점</td><td>해당없음</td></tr><tr><td rowspan="3">재가급여</td><td>2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td></tr><tr><td>1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td></tr><tr><td>0점</td><td>1종 급여 제공</td></tr></table>	구분	전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시설급여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구분	전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시설급여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_____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td></tr><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td></tr><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td></tr><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3점	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3점		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8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절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적정</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미흡</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계획서 적절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계획서 적절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미흡																		

항목	세부 기준	점수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5점</td><td>충족</td><td>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td></tr><tr><td>0점</td><td>미충족</td><td>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충족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미충족	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____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충족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미충족	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자체, 일부 위탁]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5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td></tr><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3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3점</td><td colspan="2">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td></tr><tr><td>2점</td><td colspan="2">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td></tr><tr><td>1점</td><td colspan="2">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td></tr><tr><td>0점</td><td colspan="2">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		2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		1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		0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		____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																
2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																	
1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																	
0점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3점)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3점)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2점) ☐ 동일 건물에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2점) (해당하는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2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____점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2. 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tr><td>점수</td><td>사회복지사업법</td><td>노인복지법</td><td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d></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_____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tr><td>점수</td><td>노인장기요양보험법</td></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table><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tr><td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d></tr><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tr><td>④ D등급(4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항목	세부 기준	점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 운영규정 계획 수립(10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계획 수립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	_____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																		
☐ 직원 교육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직원 교육계획 수립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td></tr><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	2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																		
2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3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_____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td></tr><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우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2점	미흡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우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2점	미흡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table><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_____점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항목	세부 기준	점수																																													
	☐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자체, 일부 위탁] <table border="1"> <tr> <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 <td>8점</td><td>매우우수</td><td>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td></tr> <tr> <td>6점</td><td>우수</td><td>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절하게 마련</td></tr> <tr> <td>4점</td><td>보통</td><td>매뉴얼·용구·장비 마련</td></tr> <tr> <td>2점</td><td>미흡</td><td>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td></tr> <tr> <td>0점</td><td>매우미흡</td><td>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td></tr> </table> [위탁] <table border="1"> <tr> <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 <td>8점</td><td>매우우수</td><td>위탁 증빙 서류 완벽히 구비</td></tr> <tr> <td>2점</td><td>미흡</td><td>위탁 증빙 서류 미흡</td></tr> <tr> <td>0점</td><td>매우미흡</td><td>위탁서류가 없음</td></tr> </table> ☐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복지용구 전시 체험 공간 확보,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구비 <table border="1"> <tr> <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 <td>4점</td><td>매우우수</td><td>①, ② 모두 충실히 작성</td></tr> <tr> <td>3점</td><td>우수</td><td>①, ② 모두 충실히 작성</td></tr> <tr> <td>2점</td><td>보통</td><td>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td></tr> <tr> <td>0점</td><td>미흡</td><td>①, ② 모두 매우 미흡</td></tr> </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6점	우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절하게 마련	4점	보통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	미흡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0점	매우미흡	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위탁 증빙 서류 완벽히 구비	2점	미흡	위탁 증빙 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위탁서류가 없음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①, ② 모두 충실히 작성	3점	우수	①, ② 모두 충실히 작성	2점	보통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	미흡	①, ② 모두 매우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6점	우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절하게 마련																																													
4점	보통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	미흡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0점	매우미흡	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8점	매우우수	위탁 증빙 서류 완벽히 구비																																													
2점	미흡	위탁 증빙 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위탁서류가 없음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	매우우수	①, ② 모두 충실히 작성																																													
3점	우수	①, ② 모두 충실히 작성																																													
2점	보통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	미흡	①, ② 모두 매우 미흡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____점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항목	세부 기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_____점																																			
	<table><tr><td>점수</td><td>사회복지사업법</td><td>노인복지법</td><td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d></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d>점수</td><td>노인장기요양보험법</td></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15점)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tr><td colspan="2">< 등급별 점수 환산표 ></td></tr><tr><td colspan="2">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td></tr><tr><td colspan="2">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 0점</td></tr></table>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 0점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 0점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table><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2점</td><td>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1점</td><td>휴업 이력이 2회 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인 경우</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 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 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항목	세부 기준	점수								
	② 폐업이력(3점) <table><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tr><td>3점</td><td>폐업 이력 1회 이하</td></tr><tr><td>2점</td><td>폐업 이력 2회</td></tr><tr><td>0점</td><td>폐업 이력 3회 이상</td></tr></table>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 3회 이상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 3회 이상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_____점								
	☐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중 1개라도 미실시 한 경우 0점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관리사항 확인									
	☐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 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 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시설급여]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항목	세부 기준	점수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 보고하고 있다: 1점 - 예결산 등 보고 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첨부여부 확인 ※ 단,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직원회의 안으로 확인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 회계 및 재정 운영(8점)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여부로 대체 확인 가능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 재해예방(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 안전관리(2점)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	_____점

항목	세부 기준	점수
	시하고 있다: 2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계약의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____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 행정처분 관련 사항(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기관 평가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 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기관 평가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 ①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노력사항: 2점 ②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점	____점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u> 」 제23조 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u> 」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예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설치)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 <u>노인복지법 시행규칙</u> 」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기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 ----- --.
제8조(회의) ⑤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u>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u>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u> 이 경	제8조(회의) ⑤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u>별표에 따른</u>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u> : 원안 의결 2. <u>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u> : 부결 ③ (생략) ④ (생략)	----- -----. 제9조(심사·의결) ①----- ----- -----각 호의----- ----- -----.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2 ②----- ----- -----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용역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통보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이사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용역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15. ~ 2025. 5.30.(15일간)
3. 공고내용

대상자		계약명	해지근거
업체명	주 소		
(주)라운피앤씨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서신길 189, 안동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01호	용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제5호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공고장소 : 예천군 관보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예천군 재무과(☎054-650-6886)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료 이용 대상에 관한 조항 변경(안 제3조)

- 예천군에서 면허를 득하여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무료화 대상을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 차등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

나.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 결손액 외 무료 운행에 따른 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다. 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결손액 산정 및 청구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

- 결손액 산정 기준 : (당초) 최근 3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 (변경)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 집계에 따른 산정
- 결손액 청구 자격 : (당초) 운송사업자 → (변경)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 제출서류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서

마. 결손액 지원에 관한 준용 조항 삭제(안 제8조)

바. 관련기관 ·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간 협약 체결 규정 마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eyeong071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3) 팩스 : 054-650-6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전화 : 054-650-62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로 차등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중 “결손액”을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및 결손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등의 금지) 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결손액 청구 및 지급) ① 결손액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②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결손액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광역 무임승차 협약에 따라 발생한 운수사의 손실금은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운수사의 소속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결손액 지원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청구사유				
총결손액	원			
청구금액	원			
사업기간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결손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운송수입금 결손액 산출내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 호에 따라 운영 중인 농어촌버 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 ----- ----- ----. 단, 예산사정에 따라 연 령 및 대상별로 차등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무료 운행 등) 운송사업자 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 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u>결손액을</u>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무료 운행 등) ----- ----- ----- ----- <u>교통카드 정산시스 템 구축 및 결손액</u> ----- -----.
제5조(<u>결손액 산정</u>) <u>결손액 산정 기준은 최근 3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하며, 군수는 합 리적인 결손액 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에 의뢰하여 결손액을 산정 할 수 있다.</u>	제5조(<u>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등 의 금지</u>) 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 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 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 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 여서는 안 된다.
제6조(<u>결손액 신청 및 지급</u>) ① 운 송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결손	제6조(<u>결손액 청구 및 지급</u>) ① 결 손액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u>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u> <u>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결손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	<u>실제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u> <u>②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결손액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u> <u>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u> <u>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u> <u>② 광역 무임승차 협약에 따라 발생한 운수사의 손실금은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운수사의 소속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한다.</u>
--	--